

돈의문박물관마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2403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1년 5월 25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

1. 제안이유

가. 「돈의문박물관마을」은 〈근현대 100년, 기억의 보관소〉 콘셉트로 연중 살아 숨 쉬는 마을 단위 역사·문화공간으로 조성·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

나. 「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근거, 민간위탁을 추진함에 있어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 : 「돈의문박물관마을」 운영

나. 시설개요

- 시설명 : 돈의문박물관마을
- 소재지 :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2가 7-24 외 96필지
- 시설규모 : 대지면적 9,770㎡ / 연면적 9,209㎡(41개동)
- 전시관, 시민체험관, 공연장 등
- 개관일자 : 2019. 4. 6. (새단장 개관)

다. 위탁기간 : 2022.2월.~2025.1월. (3년)

라. 예산요구(안) : 2,640백만원

마. 위탁사무

- 돈의문박물관마을 운영 및 시설물 유지·관리
- 돈의문박물관마을 전시·행사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·운영
- 돈의문박물관마을 온·오프라인 홍보를 통한 마을 활성화 주도
- 마을의 역사성 보존 및 문화·예술이 접목된 프로그램 운영
- 서울시 문화예술 진흥 정책에 부합하는 사항 운영

바. 수탁기관 선정방법 : 공개모집

사.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- 1년 단위의 대행사 교체로 인한 운영 경험의 사장으로 비효율 발생
- 운영대행·시설관리의 이원화된 관리체제로 인한 운영상의 혼선 초래
- 마을운영이 안정화 단계에 들어섬에 따라 민간위탁 전환 위한 기반 마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5조(문화예술공간의 설치 권장)
- 「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」 제8조(문화예술의 육성 등)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6조 제3호(민간위탁 사무내용)

나. 예산조치

- '22년 예산 편성필요

다. 합 의

-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: 적정

※ 작성자 : 문화정책과 문화공간운영팀 우민경 (☎ 2133-2529)

【문화예술진흥법】**제5조(문화예술공간의 설치 권장)**

-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【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】**제8조(문화예술의 육성 등)**

- ① 시장은 문화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육성하고, 이를 지원하기 위한 문화시설 및 제반여건을 조성하는 데 노력한다.
- ② 시장은 문화예술 등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자치구 또는 개인·법인·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③ 시장은 문화시설 및 문화프로그램의 조성·개발·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.

【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】**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**

-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 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 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 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 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 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

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3. 문화·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